

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☐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,
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성백진 위원입니다.

☐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7호
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과

의안번호 제218호 「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☐ 상기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
-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지만, 그 동안 우리의 법 문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고, 시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

- 이에 법제처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사업을 통하여 법적 간결성과 함축성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시민이 보다 쉽게 읽고 잘

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비하는 작업을 시도해 왔던바, 이 조례개정 안도 이러한 취지에서 보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례상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입니다.

□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,

○ 우선, 「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“부의”를 “회의에 부치다”로 하고
- 해촉”을 “위촉해제”로 하며
- “잔임기간”을 “임기가 남은 기간”으로 하고
- “년2회”를 “연 2회”로 하고
- “소집하고자 하는”을 “소집 하려는”으로 하며
- “비치”를 “보관”으로 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.

○ 다음으로, 「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“동법”을 “같은 법”으로 하고
- “동시설”을 “그 시설”로 하고
- “미혼모·부자”를 “미혼모자·미혼부자”으로 하고
- “수탁자”를 “위탁받은 자”로 하며
- “임면”을 “임명 또는 해임”으로 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